

대청댐 + 대청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2021. 08



국 토 교 통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 본 과업은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결정함에 있어 사업계획이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여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항 [별표 2]에 의거 시행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2. 개발기본계획]

| 구 분 |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
|-----------|--------------------------|--|
| 자. 하천의 이용 | 1)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1.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같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시행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에 의거하여 결정 내용을 공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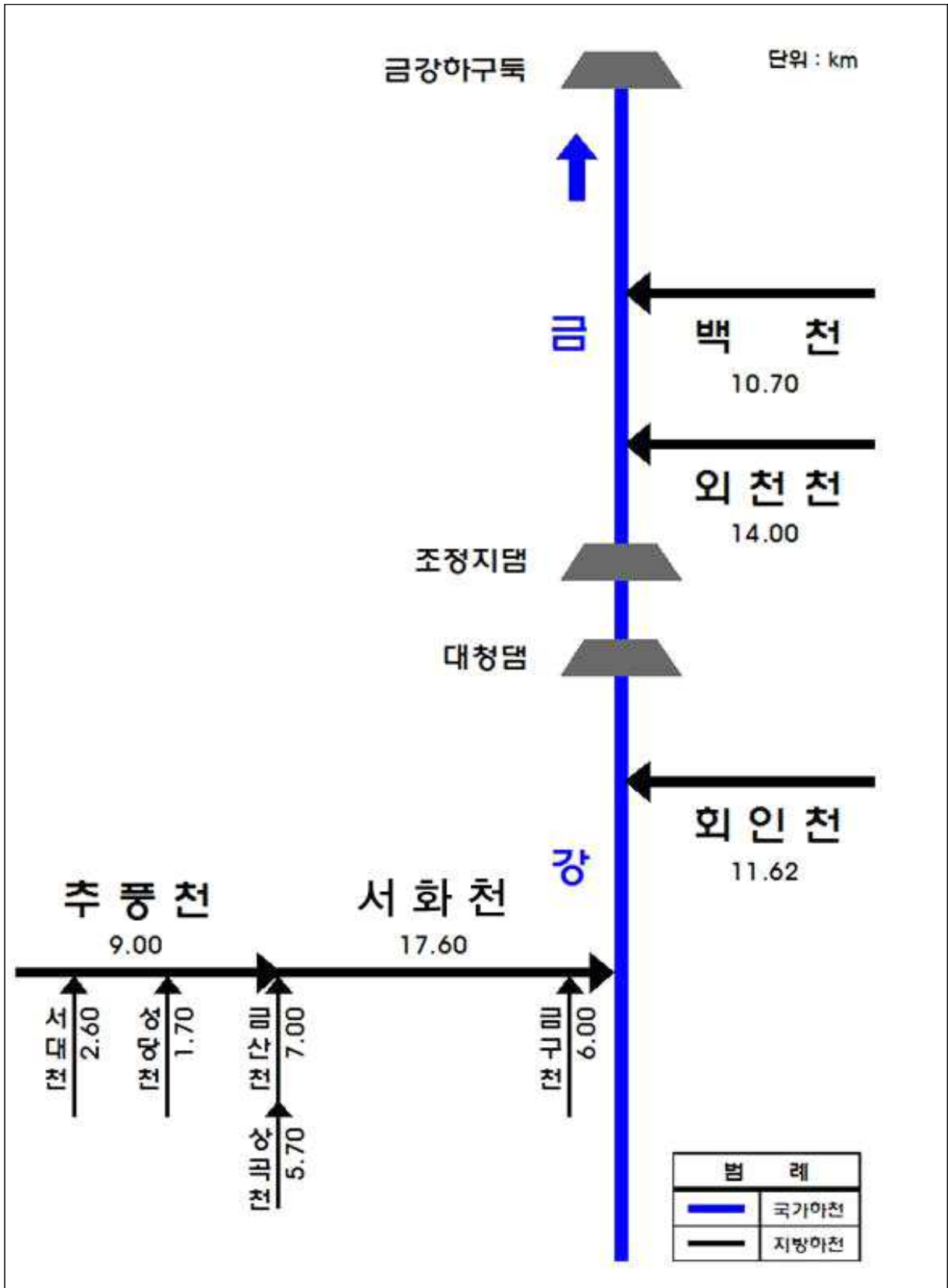
1.4 사업의 추진경위

- 2017. 08. :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7. 09. : 지방하천 관리기관 협의
- 2018. 08. : 하천기본계획 수립구간 조정(지방하천 기·중점 조정 관련 협의)
- 2020. 04. :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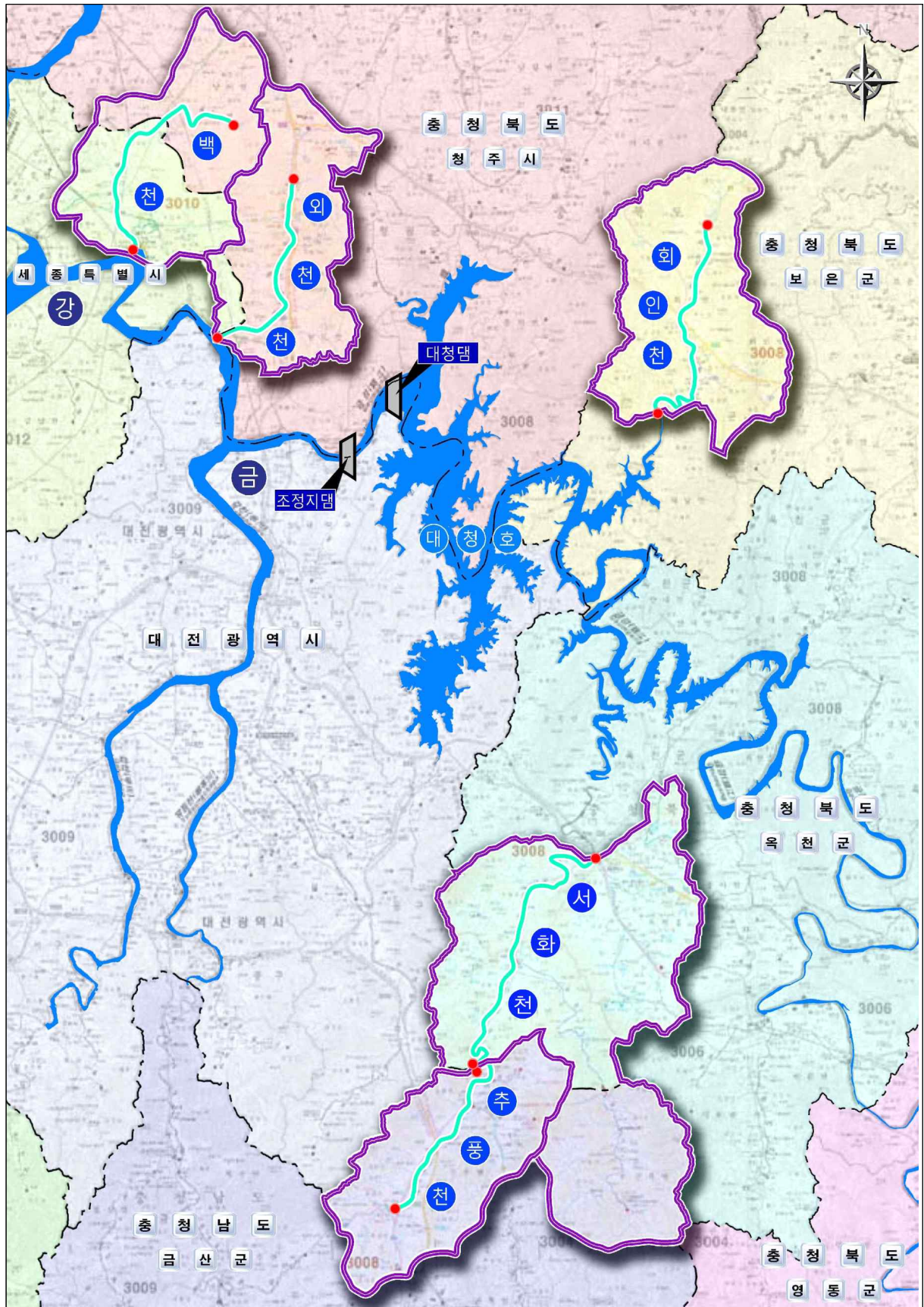
1.5 계획의 내용

- 사업 명 :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사업 내용 :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등 이·치수 및 하천환경측면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수자원종합개발 지침 확립

| 번호 | 하천명 | 하천 등급 | 위 치 | | 하천 연장 (km) | 유역 면적 (km ²) | 비고 |
|----|-----|----------|--------------------------|--------------------------------|------------------|--------------------------------|-------------------------------|
| | | | 시점 | 종점 | | | |
| 1 | 서화천 | 지방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 충북 옥천군 군북면 금강(국가)기점 | 17.60 | 176.47 | 하천명 변경(2018.11) 소옥천→서화천 |
| 2 | 추풍천 | 지방 |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마점교 하류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화천(지방)기점 | 9.00 | 61.49 | |
| 3 | 회인천 | 지방 | 충북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 충북 보은군 회북면 금강(국가)지점 | 11.62 | 52.52 | |
| 4 | 외천천 | 지방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 세종특별시 부강면 금강(국가)합류점 | 14.00 | 43.84 | |
| 5 | 백 천 | 지방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리 | 세종특별시 연동면 합강리 금강(국가) 합류점 | 10.70 | 32.80 | |
| 계 | | | 지방하천 5개소 | | 62.92 | 367.12 | |



(그림 1.4-1) 하천모식도



[그림 1.4-2] 과업구간 위치도

1.6 기대효과

- 상위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특성을 반영하여 개수 및 통수능력을 확보하고, 시설을 개량하여 최적의 우수배제 기능 확보로 홍수피해 예방
- 하천의 자연적 특성을 살리며 지역 사회발전에 부응하는 하천환경조성
- 환경친화적 하천조성으로 수변경관 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치수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주민의 안정된 영농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2.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심의위원장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 심의위원 : 협의기관(금강유역환경청)포함 총 18명

| 구분 | 성명 | 소속 | 직위 | 의견제출여부 | |
|----|-----|-----|--------------|----------------|---|
| 1 | 위원장 | 박○○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국장 | - |
| 2 | 위원 | 김○○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소속공무원 | ○ |
| 3 | 위원 | 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민간전문가(위원장 위촉) | ○ |
| 4 | 위원 | 김○○ | 금강유역환경청 | 협의기관 | ○ |
| 5 | 위원 | 김○○ | 충북대학교 | 민간전문가(협의기관 위촉) | ○ |
| 6 | 위원 | 김○○ | 충청남도 | 환경협력교육팀장 | ○ |
| 7 | 위원 | 오○○ | 충청북도 | 환경협력팀장 | ○ |
| 8 | 위원 | 이○○ | 세종특별자치시 | 환경정책과 | ○ |
| 9 | 위원 | 김○○ | 충청남도 금산군 | 환경자원과장 | ○ |
| 10 | 위원 | 이○○ | 충청북도 청주시 | 오염총량팀장 | ○ |
| 11 | 위원 | 변○○ | 충청북도 보은군 | 수계관리팀장 | ○ |
| 12 | 위원 | 이○○ | 충청북도 옥천군 | 환경과 | ○ |
| 13 | 위원 | 한○○ | 금산군 추부면 | 금산군 주민대표 | ○ |
| 14 | 위원 | 이○○ | 세종시 부강면 | 세종시 주민대표 | ○ |
| 15 | 위원 | 김○○ | (자)자연보호중앙연맹 | 세종시 주민대표 | ○ |
| 16 | 위원 | 김○○ | 청주시 강내면 | 청주시 주민대표 | ○ |
| 17 | 위원 | 서○○ | 보은군 회인면 | 보은군 주민대표 | ○ |
| 18 | 위원 | 조○○ | 옥천군 동정리 | 옥천군 주민대표 | × |
| 19 | 위원 | 박○○ | 세종환경운동연합 | 시민단체 | ○ |

2.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시행번호 : 건설관리과-1364호
- 심의방법 : 서면심의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총괄 의견

이견없음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이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이견없음
3. 대안
 이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이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이견없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의견없음

2021. 5. 3.

심의위원 김 태 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대정담+대정담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위원 : 노태호(원)

□ 총괄 의견

○ 지방하천별 기본계획 수립 및 작성

- 하천기본계획은 환경보전정책 또는 환경보전시책과 부합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행정계획이므로 통합적 물관리 측면에서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상위계획으로서의 상세함과 위상이 제고되어야 함
- 따라서 국가 및 각 지방하천별 관리를 위한 10년 기간의 법정계획이므로 하천별 상세한 현황과 보전시책, 시설계획 및 시설물 관리대상 등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함
- 본 평가서는 충남 금산군, 충북 옥천군, 보은군, 천안시 및 세종시에 분포하는 5개소 지방하천의 법정계획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지방하천의 중요성을 소하천 수준으로 간과한 측면이 높다고 판단됨
- 따라서 국가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은 독립적으로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대상 5개 지방하천 역시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여 제작성하고, 규모가 작은 일부 지방하천에 한하여 유역개념을 적용하여 다 하천과 함께 작성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포함하는 지역의 하천기본계획 권역화의 문제점

1. 국가하천 및 규모가 큰 지방하천을 권역별로 일원화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하천별 생물상이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매우 부적절방법이며, 이는 하천 구간별 적용되는 개수계획의 적정성을 파악하기에 부적절한 작성양식임
 - 소하천 정비의 경우 그 규모가 작고 유역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규모 공간 범위를 두고 분포하고 있어 종합적인 동식물 현황분석이 수용 가능하나, 본 권역의 경우 집수역의 규모가 크고 각 분수령이 생물분포의 지리적 격리작용의 기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지니고 있어 생태적 현황에 기초한 개수계획을 평가함에 부적절함
 - 동식물의 경우는 유역별로 특이성을 달리하고, 습지역의 분포 등은 특정 집수역 내외에서 하천 유하 거리별로 다르게 나타남. 따라서 권역별로 넓은 공간역을 하나의 서식역으로 묶어 현황을 정리하는 것은 정확성을 저하시키고, 특히 범정보호종의 분포역이나 동물서식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경우 권역별 분석으로는 정확한 현황 및 영향을 가늠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담지 못함
2. 수리수문항목의 경우 유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어 치수적

- 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개수계획 수립이 용이할 수 있으나, 이는 이치수적인 영역에 경도된 계획의 수립에 중점을 둔 평가서 작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종종 초래함
-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전략평가서 작성 시에는 각 하천별로 평가서를 작성하되
 - 수리수문 항목은 권역의 종합적인 내용(원계의 권역화 평가 내용)과 각 하천별 특이성을 평가한 내용을 담고,
 - 동식물의 경우에는 각 하천별로 분포 및 영향예측 등 상세한 자연환경 현황을 토대로 개수계획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3. 국가하천은 물론 규모가 큰 지방하천의 환경보전 및 생태복원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평가서는 하천별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평가 시에 환경보전시책의 취지 및 통합물관리정책 전환에 따른 수생태 여건 개선에 충실한 최상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규모가 큰 다수의 하천을 단일 권역화하여 반복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10년간 적용될 장기법정계획 수립 및 관리에 있어 환경적 고려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자연환경 보전(생물서식지) 영역에 있어서는 하천별로 작성을 우선하여 각 하천별로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음
-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하천의 설계 빈도를 특정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설계빈도별 영향 및 적정성을 평가를 실시한 하천구간별 자료를 명시하여 치수 및 하천관리 방안의 수립을 위한 적정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과도한 하도정비 및 하상교란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대상 하천의 저질오염도를 평가하여 필요 시 요구되는 조치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목표 수질 선정 후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폐기물 발생량을 상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출 및 처리 내용을 수립, 반영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의견없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한

- "선 보존, 후 치수"의 기본개념에 기초한 대안의 설정
 -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해 하천구간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구역을 보전, 복원, 친수 등의 용도별로 지정하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 특정 빈도의 일괄적인 치수계획의 수립으로 이들의 공간역이 훼손되거나 할 경우, 적용 빈도를 낮추고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선 보존 후 치수"를 위한 기본 개념을 적용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수립, 반영하여야 함
- 호안 적용 및 정비 기법 대안
 - 호안공법으로 석재요(자연석 쌓기, 식생옹벽, 석축쌓기 등) 등의 적용을 가능한 지양하여야 함. 하천역의 경우 최상류역을 제외하고 자연적으로 호안을 이루는 곳이 많지 않음을 고려하고 하천구간의 준위에 따라 자연적 경관성이 적합한 호안공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횡적 수직단차를 유발을 지양하여야 함
 - 종적인 수직단차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자연친화적 기법 적용, 상위 규모의 하천역과 합류되는 하천구역은 횡적 시설물에 의한 연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 대안을 수립하여야 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현황조사
 - 동·식물 서식 및 분포현황 파악은 10년간 적용될 장기법정계획 수립 및 관리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사항이므로 하천개황 및 식생, 담수생물상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동·식물상의 경우 각 하천별 소산식물 및 출현 동물상 목록을 작성
 -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및 출현 지점 명기
 - 대규모 하중도 및 습지 존재 여부 평가
- 하천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 사업대상 하천 중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간역(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이 연계되어 있는바, 수변식생 원형보존, 보/낙차공 철거 등의 사업계획과 함께 실현 가능한 보전대책을 별도로 수립·제시하여야 함(해당구간에 유입 또는 연계된 중요 소하천 현황 및 개수계획을 생태자연도 도면에 표기하여 제시)
- 보 및 낙차공 등 시설물계획
 - 낙차공 또는 보는 하천의 연속성과 생물의 분산능력 및 통수효과를 저해하므로 준치 및 재가설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치 및 준치목적이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는 이를 지양하여야함
 -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여 노후 되었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낙차공은 철거하여 유수의 자연적 흐름을 방해하는 인공적 구조물의 수를 감소시키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하천 연속체 기능을 저해하는 횡적 구조

- 물 계획의 적정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간역(총괄 내용 참고) 내 보 및 낙차공 철거 방안 및 평가결과 제시
- 1km당 1개 이하의 규모로 계획 수립을 적극 고려하여 존치 및 재가설을 최소화한 결과 제시
- 어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보 및 낙차공 현황사진 및 시설물 대비 어도설치 비율 제시
- 존치 및 확장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철거 및 축소 조정안(철거 비율 명시)
- 유속과 수량이 감소하는 곳에서의 생태적 기법에 대한 수단적 대안 적용가능 대상 시설물 개소수 분석, 제시
-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유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하천역에는 하상의 준위를 낮추고 소(뚝)를 형성하여 증으로써 인공적 구조물의 보강 및 재가설을 억제토록 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
- ※보강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후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어도 등 유수생물상의 분포구배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수단을 강구하여 계획에 반영

○ 하천계획빈도

- 사업대상 하천과 인접한 도시의 이용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정 하천설계 빈도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하천 교란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평가
- ※ 현재 국가하천(100~200년 빈도), 지방하천(50~100년 빈도), 소하천(30~100년 빈도) 등 하천등급별 설계빈도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상 하천의 규모(유역면적 및 하천연장) 및 홍수량을 고려

○ 하천시설물 정비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정량적인 처리계획 수립

- 폐기물의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해서는 폐기물의性状, 종류, 양을 사전에 예측하여 발생단계에서 분리·배출 및 수집·보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중설/재설치, 철거 계획이 확정된 교량, 낙차공 및 보 등에 대하여 폐기물 발생량을性状, 종류별로 산정하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참고하여 위탁처리에 따른 소각, 매립, 재활용량을 정량적으로 계획하여야 함

○ 수질개선 대책

- 하천의 수질 악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중·대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참조하여 목표수질 선정 후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및 대책(흐름 정체구역의 해소, 완충공간 확보 등)을 수립하여야 함

○ 재해예방 및 정비우선순위 선정

- 계획구간 중 풍수해위험지구, 수질오염관리 필요 지역, 인구밀집지역 등과 인접한 하천구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천정비를 시행하고, 환경적 민감지역에

- 대해서는 후순위로 선정하는 등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수해피해 발생 당시의 홍수량 및 홍수위, 피해 범위와 규모, 기존 호안상태 등을 조사하고, 피해원인 분석을 통한 하천재해복구 및 예방 방안을 마련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분석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항목 추가(76~77쪽)

- 인구주거 항목 추가하여야 함("6장. 주민의견 수렴" 참조)

4. 주민의견 수렴

○ 지역 지식을 활용한 계획 수립

- 본 계획은 치수기능 향상의 일환으로 홍수소등을 계획할 수 있으므로 계획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과거 홍수로 인한 수해 관련 고유한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간단한 서면조사 혹은 면담을 통해 수해와 관련된 지역 주민의 지식을 조사하고 이것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기타

○ 하천골재 채취계획 여부 평가 및 반영

- 본 권역의 하천기본계획 운영 기간 중 계획된 하천골재 및 수변골재 수급계획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이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 허가된 하천골재 채취에 관한 사항(구간, 채취량, 채취기간 등)을 비교 가능토록 연도별 현황을 명시
- 국가 및 광역지자체 골재수급계획을 고려한 향후 계획 명시

○ 평가 및 분석 자료의 가독성 확보

- 각종 필요한 도면(조사지점 및 경로, 식생도, 집수역 수계분포 현황,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도, 중요종 출현분포도 등)은 획득 가능한 가장 상세한 지형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에 투명시를 이용하여 명확히 중첩·표기하되, 각 지점에 대해서는 좌표를 명시하여야 함(가독성을 확보할 것)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팔 의 견

- 하천의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대상 권역 내 환경관련지구·지역(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이 다수 위치하므로 해당 구간 계획 수립시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 대상 지역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하여야 함
- 대상 지역 설정 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하천별 주변 현황을 도면(실측도, 항공사진 등)에 표기

2. 토지이용 구상안

- 현재 토지이용현황, 생태계 특성, 수질 및 수리생태적 특성과 관리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하천 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대안

-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단순 비교가 아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설정해 대안별로 환경적 측면을 비교·제시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선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천의 이·치수 능력 확보 대안(하폭확대, 하천제방, 하도정비 등)을 계획 구간별로 상세히 비교
- 호안, 보 및 낙차공 등 횡적시설물의 환경적 기능과 재해예방적 기능을 객관적(수치적)으로 비교하고, 대안(철거, 재설치 등)을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시 구간별 환경적, 수리·수문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제시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입지에 따른 현황, 사업계획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저감계획을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 현황을 자세히 조사·제시하고, 환경적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보전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별표2](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를 참조하여 동·식물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동절기 조사 지양)에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조사
 - 계획하천 내 생태자연도 1등급에 속하는 구간 존재시, 1등급으로 지정된 사유를 명시하고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수질 조사는 하천 상·하류의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해 현황을 파악하고 중권역별 목표수질과 연계한 수질목표를 설정해 관리방안 제시
 - 대기질 및 소음·진동은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 시설을 면밀히 파악해 지점을 선정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
 - 사업지구의 경관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근·중·원경별로 가시권 분석을 시행하고, 충분한 수의 조망점을 선정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의견수렴 시 대상 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포함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공람 및 설명회와 관련하여 현수막 설치, 문자발송 등 다각적 안내
 - 공람 장소는 대상 지역 내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용어, 수치, 조사 결과 등을 순화한 평가 요약서(사진, 그림, 수치비교 등)를 작성·제공
-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평가서 작성 시 현지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문헌 등을 활용하는 경우 객관성이 확보된 최신 자료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2021. 5. 12.

심의위원 김민경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전반적으로 잘 작성되었으나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자체 명의 수정이 필요하고, 대안2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2. 토지이용 구상안

- p.30-31: "청원군"은 "청주시"로 수정, "청원군 부용면"은 "세종특별시 부강면"으로 수정

- p.35: "고북도립공원"은 "고북시립공원"으로 수정

3. 대안

- p 69: <표 4.2-4>의 대안2에서 "제방축제+하도정비"의 대안은 필요없는 것인지? "제방보축+하도정비"와의 차이점은 없는 것인지?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21. 5. 14.

심의위원 김진수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계획의 공사 및 운영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밀하게 예측, 조사,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동 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환경보전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동식물상 등에 의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대상 지역을 획일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계절별 풍향, 인근 주변 지역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공사 및 운영시 환경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범위의 설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대기질 및 소음진동 평가범위는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까지 확대 필요
-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수질 등 대상지역의 범위, 조사지점수, 조사횟수를 제시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현재의 자연 지형 및 식생을 최대한 고려하여 생태적 가치가 큰 지역은 가급적 원형을 보전하고 훼손을 최소화하여 생태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조성하고, 동 계획지구와 주변 생태계가 생태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3. 대안

- 대안은 환경적 목표와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수단과 방법 등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며,
 - 제시된 대안 중 하천 수질 악화 등 수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대안은 2개 이상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환경영향을 사전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다양한 하천 생태계 환경 여건[동·식물상, 보전지역, 칠세도래지, 인근 지방도·국도 인접 위치, 저수지, 지류 하천, 주변 점·비점오염원, 기존 시설물(이수 시설물, 횡단 시설물), 연계구간 및 합류부 등]에 맞는 영향을 고려하여 아치수시설 등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절한 저감 및 보전대책(출연중 보호, 어도설치, 식물상 변화에 대한 대책, 노거수 및 보호수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함.
- 정비사업시 주변지역의 식생변화와 현존 식생도,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동물상 등의 변화 등을 중점 검토하여야 함.
- 지난해와 같은 태풍 등 집중호우와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 시대를 대비한 적절한 설계빈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평가방법 및 평가범위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 2020.12.22.)을 활용하여 평가되어야 함.
 - 동·식물상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별표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별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조사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의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시 누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조사항목은 수질, 대기 환경기준이 설정된 모든 항목을 실시하고, 하천저질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여야 함.
- 수질조사는 하천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대기질·소음·진동 측정지점은 주거 밀집지, 학교 등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검토하여야 함.
- 상수원보호구역과 동일한 수계인지 검토하고,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저감방안 및 비점오염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하천 유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 구역으로서 오염부하량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수질오염총량과 관련하여 의견(사업시행에 따른 발생·삭감·배출계획 등)을 작성하여 관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에 해당되어 수질보전을 위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인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류유출사고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계획하천 주변에 위치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시설 등을 파악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상수원 및 하천 수질 등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수질 현황 및 연관된 수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 보전 및 관리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으로 인한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환경부, '15.12.9. 개정)에 따라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저감목표에 따른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이행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설명회는 관련 이해당사자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공고 외 이·통장을 통한 충분한 홍보와 더불어 면사무소, 마을회관 등에 관련서류를 비치 열람토록 하는 등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동 사업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 하천구조물 계획시 하천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하천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인공적 변형을 최소화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방, 보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한 인공구조물 설치를 제한하여야 함.
- 계획홍수량의 산정에 이용되는 강우량 등 자료는 최신자료 인용
- 향후 계획 수립시 어도를 계획할 경우, 서식하는 어종의 특성을 감안한 어도 형식결정이 중요하며 세굴로 인하여 어도와 하상이 이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 주민 의견수렴 시 대상 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포함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하천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18, 국토부), 충청남도 하천기본계획 업무 매뉴얼(2020, 충남도)에 따라 수립해야 하며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2021. 5. 18.

심의위원 김 학 중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이·치수 목적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환경·생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나친 인공화는 지양하고 본래의 자연생태계를 보전·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하천생태조사 결과 자연도가 높은 구간은 가능한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존하천의 선형변화 최소화, 구간별 하천생태현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수립과 자연친화적 재료 및 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살리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대상지역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설정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내용·관련자료 등을 명시하는 등 사용근거와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계획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개발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을 경우 이를 대상지역에 포함
- 하류 합류점, 지류 소하천과의 연계성(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 설정
- 지형·지질,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수질, 수리·수문 등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최대한 확대·설정

2.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 본래의 유로, 하폭 및 하상을 최대한 보전하고, 수리·수문 분석 및 제내지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정비계획 수립
- 생태·경관 환경이 우수한 지역 통과, 인접구간 내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등 인위적 구간은 자연성을 복원하는 방안 강구

3. 대안

- 계획 시행 시 사업지역의 지형 및 수생태계 등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호안 조성 시 범면 환경사 조성, 친환경적 공법 적용 등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함.
-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통합자료(대안별 도면 및 사업내역 비교표 등)와 대안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사업내용 및 주요 대안별 환경적 특징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은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수질, 수리·수문 등을 고려하여 공사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적정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여야 함.
 - 강수, 기상, 수해 및 가뭄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고, 하천의 지형·형상 등 생태적 보전가치 여부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 하천의 통수단면적 확보 등의 이·치수적인 측면의 검토를 통한 수리·수문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
 - 동·식물상은 문헌조사, 하천구간별 조사(수생태계 포함)를 통한 사업구역 내 법정보호종 출현 및 서식지 분포여부를 조사·제시하고 보전방안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하류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 사업시행
 -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정온시설(주거지역, 가축사육시설 등)의 분포현황을 도면을 사용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사업시행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영향을 충분히 설명,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야 함. 특히 하천정비 공사 예정 구역의 경우 인접한 마을주민의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6. 기 타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및 부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2021. 5. 7.

심의위원 오 주 영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금강유역물관리계획 및 금강 자연성 회복선도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계획 비교표 작성 반영 등) 필요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계획시행 후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장래 예측 생활계(영업계 등), 산업계, 토지계 오염배출부하량에 대한 예측 필요

2021. 5. 14.

심의위원 이병관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계획 수립 시 환경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항목에 대하여 보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용도보전지역의 위치 및 분포사항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대안 선정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주변지역의 자연·생활환경 등 본 계획의 실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항목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설정해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의견 수렴 시 관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1. 5. 14.

심의위원 김 현 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과 이·치수적인 측면이 조화되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의견을 반영 할 것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할 것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3. 대안
 - 의견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중 경관의 경우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영향을 평가할 것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대상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할 것.
6. 기 타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으로, 삭감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여 계획의 승인·허가 전까지 수질오염총량 관련 협의를 하여야 함

2021. 5. 12.

심의위원 이준경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사업 추진 및 원활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안 및 저감방안 등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하천 및 영향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사료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 퇴적물등의 오염물질 및 유류 유출 등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하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강구, 이행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3. 대안

- 환경적 목표와 행정계획의 목표의 방향, 추진 수단과 방법 등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며, 제시된 대안 중 하천 수질악화 등 수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사업계획지역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지역개발 부하량을 환경위생과 수계관리팀으로부터 할당받아야 함(2021년부터 4단계 적용)
- 선정된 평가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를 충실히 실시하여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시 해당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6. 기타

- 본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해 관련규정 및 심의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

2021. 5. 14.

심의위원 수계관리팀장 변상일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민원 관리에 최선을 기하기 바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하천기본계획수립 시 자연환경 및 수환경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반영하기 바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지역 주민이 제시한 의견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견 수렴은 법적절차에 따라 수행하기 바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옥천군의 서화천 등의 수계는 대청댐 상류에 위치한 바 공사 추진시 하천영향에 최소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
 - 하천명을 일원화 시킬 것(소옥천은 서화천으로 수정 요, 평가준비서 P15 등)

2021. 5. .

심의위원 이 충 하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총괄 의견

-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이견 없음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 3. 대안

- 의견없음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1. 5. 31.

심의위원 한 호 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2. 토지이용 구상안
 - ^{없음} 있음
3. 대안
 - ^{없음} 있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없음} 있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 ^{없음} 있음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 ^{없음} 있음

2021. 5. 14.

심의위원 이 용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총괄 의견

○ 이견 없음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2. 토지이용 구상안

○ 이견없음

3. 대안

○ 이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이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21. 5. 14.

심의위원 김진국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총괄 의견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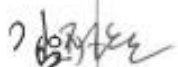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1. 5. 31.

심의위원 김정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총괄 의견

- 주민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할 것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없음
3. 대안
○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없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없음

2021. 5. 31.

심의위원 서기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관 의 건

- * 평가항목 범위 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
- 하천정비의 방향에 있어서 하천의 종적 연결성을 훼손하고 있는 하천 횡단 구조물인 보를 신설하거나 보강하기보다는 해당 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해체하거나 수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이나 대기오염 영향에 머물게아니라 공사, 운영시 탄소중립에 기여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 과정에 있어, 계획의 검증을 위한 환경단체 혹은 환경 커뮤니티그룹과의 소통과 공유를 통한 검증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공개적인 설명회는 필요하며,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론화하기위해 생태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전반적으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에 있어서 환경생태영향외에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계획을 유도하도록 해당항목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② 토지이용 구상안

- 제내지 등 하천 부지 편입의 방향을 홍수조절을 위한 우수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길 바랍니다.

③ 대안

- 전반적으로 적정함. 단, 하천기본계획이 치수에 치우쳐있어 제방축제와 하도정비, 보 등 횡단구조물 계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대

비한 홍수와 가뭄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후습지, 우수지 등을 활용한 치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하천 횡단구조물인 보를 신설하거나 보수 보강하기보다는 보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를 통해 해체와 생태친화적인 보강을 통해 하천의 연결성을 확보하여 홍수를 예방하고 단절된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해야 합니다.

④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은 적정하나 실제로 적용하여 영향분석결과가 제대로 드러나도록 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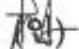
⑤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설명회가 필요하며, 주민의에도 환경단체와 생태전문가가 참여하도록하여 의견수렴하여야 함.

⑥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해당 하천유역 및 수계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입지에 대한 적정성과 세부사업의 타당성을 환경전문단체(혹은 민간환경연구소)에서 검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 일부 준비서면에 '소옥천', '한강수계' 오답자 수정 요망.

2021. 5. 1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박 창 재 

제3장 대상지역의 설정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하였음.
- 본 계획 수립으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2018-205호”에 제시한 평가 항목별로 검토하였음.

〈표 3.1 - 1〉 평가항목별 검토대상지역 설정

| 평가항목 | | 평가사항 | | 대상지역 범위 |
|--|------------------------------------|------------------|--------------------------------------|----------------------------------|
| 계획의 적정성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 계획하천 |
|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 대안 비교를 통한 적정성 검토 | ○ 계획하천 |
| 입지의 타당성 | <input type="checkbox"/> 자연환경의 보전 | | | |
|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동·식물상 | ○ 육상·육수동물상에 미치는 영향 |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 | | 자연환경자산 | ○ 하천 정비시 주변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지형·지질 | ○ 하천 정비시 하천지형 변화영향 | ○ 계획하천 |
| |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 경관 | ○ 하천 정비시 주변 지역의 미치는 경관 변화 |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 | | 수환경의 보전 | 수질 | ○ 하천 정비로 인한 계획하천의 부유토사 증가에 의한 영향 |
| | 수리·수문 | | ○ 하천 정비시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 등 수리·수문변화 및 영향 | ○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
| 입지의 타당성 | <input type="checkbox"/> 생활환경의 안정성 | | | |
| | 환경기준의 부합성 | 기상 | ○ 계획 하천 인근 기상자료 분석, 대기질 항목의 분석 기초자료 |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 | | 대기질 | ○ 하천 정비시 주변 지역의 대기질 영향 | ○ 계획하천 및 주변 정온지역 |
| | | 소음·진동 | ○ 하천 정비시 주변 지역의 소음·진동 영향 | ○ 계획하천 및 주변 정온지역 |
| | | 토양 | ○ 하천 정비시 토양오염 영향 | ○ 계획하천 |
| | 자원·에너지 순환의 적정성 | 친환경적 자원순환 | ○ 하천 정비시 건설폐기물, 생활 폐기물 등 발생 및 처리방안 |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 <input type="checkbox"/>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 | | |
| 친환경적 토지이용 | 토지 이용 | ○ 계획 하천의 토지이용 변화 | ○ 계획하천 | |

제4장 대안의 설정

4.1 대안의 종류 선정

- “대안”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함.
- 본 계획의 대안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18-205호」에 의거하여 <표 3.1-1>에 제시된 대안의 종류 중 계획비교와 수단·방법에 따른 대안을 선정하여 대안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음.

<표 4.1 - 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 대안종류 | 대안 선정방법 | 선정항목 |
|-------|---|------|
| 계획비교 |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 |
| 수단·방법 |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 |
| 수요·공급 |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
| 입지 |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 |
| 시기·순서 |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
| 기 타 |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 |

<표 4.1 - 2> 대안 선정 미선정 사유

| 대안종류 | 대안 선정 제외 사유 |
|-------|--|
| 입 지 | ○ 본 계획은 종합계획수립 특성상 하천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계획으로 별도의 개발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이 아니므로 대안선정이 불가능하여 제외하였음 |
| 시기·순서 | ○ 본 계획은 계획홍수위와 기존 제방고를 비교·검토하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과 홍수시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가능한 빠른 시기가 최적의 대안임 |
| 기 타 | ○ 본 계획시행에 따른 [기타] 대안은 없으나 향후 하천정비사업시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제시시 적극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 |

4.2 대안별 검토 및 비교

가. 계획비교에 대한 검토

- 계획비교에 대한 대안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 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을 대안으로 선정함.

〈표 4.2 - 1〉 계획비교에 대한 대안 검토

| 구 분 | 대 안 | |
|-----|--|---|
| | 대안1 : 현상태 유지(No Action) | 대안2 :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Action) |
| 장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하천을 유지함으로써 인위적인 계획 없음 ○ 공사시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분진 등의 문제 발생 소지 없음 ○ 공사비 발생하지 않음 ○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 사업 시행에 따라 하천 및 인근지역 정비로 자연재해 대비 ○ 매년 일어나는 수해에 대한 피해를 경감시킴으로써 수해복구 비용 등에 대한 경제적 손실 경감 ○ 하천정비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시행으로 생활환경 증진 ○ 하천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하천의 수변 경관 개선 |
| 단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시 인근지역의 침수 등이 예상됨 ○ 홍수, 태풍 등의 수해에 대한 피해 복구비용으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 ○ 하천공간의 관리 및 이용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정비공사시 일시적으로 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 ○ 제방공사로 인한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나. 수단·방법에 대한 검토

- 수단·방법에 따른 대안은 이·치수 및 환경 달성을 위한 방법을 대안으로 선정함.

〈표 4.2 - 2〉 수단·방법에 따른 대안 검토

| 구분 | 대안1 (No action) | 대안2 (action) | | |
|-------|--|--|--|---|
| | | 제방축제 | 제방보축 | 제방보축+하도정비 |
| 장·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상태 유지에 따른 필요 공사비 없음 ○ 치수안정성 결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방축제로 하천공간 확보 (홍수시 안정성 확보) ○ 제내지 편입면적증가 ○ 하천내 구조물(보, 낙차공 등) 신설, 보수 및 보강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방보축으로 하천공간 확보(홍수시 안정성 확보) ○ 제내지 편입면적증가 ○ 기존 제방을 활용하여 경제성 확보 ○ 하천내 구조물(보, 낙차공 등) 신설, 보수 및 보강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방보축 및 하도정비(준설)로 하천공간 확보(홍수시 안정성 확보) ○ 제내지 편입면적 최소화 ○ 수생생물의 서식환경 변화 ○ 하천내 취수시설물 보호 대책 필요 ○ 하천내 구조물(보, 낙차공 등) 신설, 보수 및 보강 필요 |
| 선정 | - | ◎ | | |
| 선정 사유 | ○ 제내지 편입면적이 다소 증가하나 수생생물의 서식환경 및 취수시설물 보호를 위해 계획하천을 고려한 축제, 보축, 보축+하도정비계획 수립 | | | |

다. 수요·공급 대안 검토

- 수요·공급 대안은 현상태 유지시(대안1)과 금회 수리·수문분석 시행을 통한 계획수립(대안2)로 구분하여 비교·검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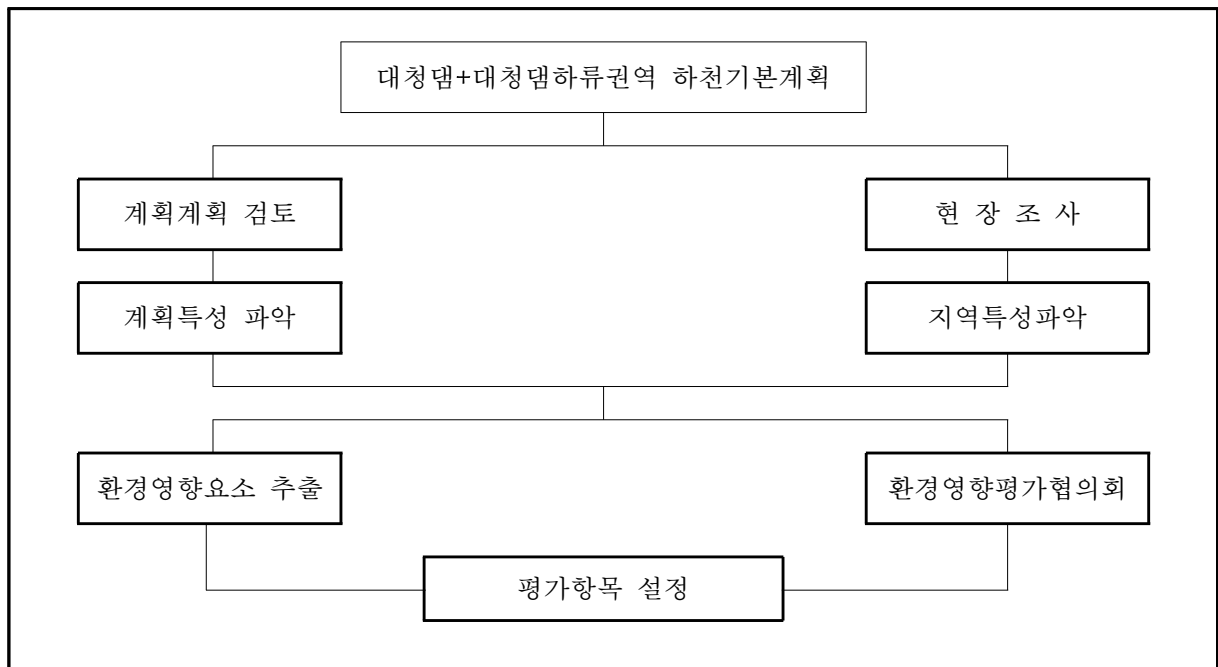
〈표 4.2 - 3〉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 검토

| 구 분 | 대안1(NO action) | 대안2(action) |
|------|---|---|
| 기준빈도 | ○현상태 유지 | ○치수계획 기준빈도 80년 이상 (금회 수리·수문분석 시행을 통한 계획 수립) |
| 장 점 | ○편입부지 및 공사비 미발생 | ○치수안정성 확보 용이 ○설계빈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는 경향에 부합하는 치수계획 수립 가능 |
| 단 점 | ○하천설계기준에 미달되는 하천의 경우 지역주민의 인명 및 사유재산 피해 우려 ○치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 ○상대적으로 공사규모가 늘어나게 되어 공사 대상지역 증가 ○치수사업의 규모 공사비 증가 |
| 선 정 | - | ◎ |
| 선정사유 | ○영산강의 홍수피해 경감 및 방지를 위한 계획 홍수량은 치수안전도 설정기준, 하천의 중요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하천관리처의 치수관리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제5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5.1 평가항목 설정

- 본 계획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8-205호」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현황조사와 자료조사를 통해 지역개황을 파악한 후 공사시와 운영시 단계로 구분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절차를 이용하여 추출함.



(그림 5.1 - 1) 평가항목설정 흐름도

<표 5.1 - 1> 단계별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구 분 | 환경영향요소 |
|------|---|
| 공사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 소음·진동, 폐유발생 ◦ 지형의 변형, 질·성토 ◦ 공사시 토사유출 및 부유물질 농도 증가 ◦ 수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자연환경자산 훼손 여부 |
| 운영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수량 및 수질관리,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 하천 생태계 보호 ◦ 수리·수문 변화 |

나. 항목의 설정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항목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을 참고하고, 계획의 특성, 인근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5.1 - 2〉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

| 분 야 | | 세부 항목 | 결정결과 | 사 유 |
|------------------------------|-------------------|---------------|------------------------|---|
| 자연 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동·식물상 | 평가 | ○식물상, 식생 및 동물상의 변화 |
| | | 자연환경자산 | 평가 | ○계획하천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
|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지형·지질 | 평가 | ○질·성도에 의한 지형 변화 ○토사유출, 비탈면 발생 등 |
| |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위 락 |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
| | | 경 관 | 평가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영향 |
| | 수환경의 보전 | 수질 (지표·저질) | 평가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이하여 수계에 미치는 영향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
| | | 수리·수문 | 평가 | ○계획시행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파악 |
| 해양환경 | | 제외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경미 | |
| 생활 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 부합성 | 기 상 | 평가 | ○대기질 영향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
| | | 대기질 | 평가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비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
| | | 악 취 | 제외 | ○본 계획으로 인한 악취영향 없음 |
| | | 토 양 | 평가 | ○공사시 토양에 미치는 영향 |
| | | 소음·진동 | 평가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
| | | 위생공중보건 |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
| | | 전파장해 |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
| | | 일조장해 |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
|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제외 |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미미 | |
|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온실가스 | 제외 | ○본 계획으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 미미 |
| | |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평가 | ○공사시 지장물 철거, 수목 훼손, 공사인부에 의한 폐기물 등 발생 |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 | 평가 | ○계획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 | |
| | 인구주거 | 제외 |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 변화 없음 | |
| | 산업 |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 |

5.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가. 평가범위 설정

- 본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범위는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2013」 및 행정규칙(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환경영향평가 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설정하였음.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시설 등에 대하여 영향예측을 수행하여, 예측 결과에 따라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

〈표 5.2 - 1〉 평가범위 및 방법설정

| 평가항목 | | 평가 범위 및 방법 선정 | | 검토내용 |
|-----------------------------|---------|----------------|-------------------------------|---|
| | | 지역(범위) | 방법 | |
| 자연 환경의 보전 | 동·식물상 | ○계획하천 ○주변지역 | ○문헌조사 ○사업계획 분석 | ○식물상 및 식생현황, 육상·육수동물상 현황 파악 및 변화 예측 |
| | 자연환경 자산 | ○계획하천 ○주변지역 | ○현지 및 문헌조사 ○사업계획 분석 |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및 미치는 영향 분석 |
| | 지형·지질 | ○계획하천 | ○현지 및 문헌조사 ○공사계획평면도 | ○지형·지질 현황 파악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사면 안정성 등 예측 |
| | 경 관 | ○계획하천 | ○현지 및 문헌조사 ○경관변화 예측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검토 |
| | 수 질 | ○계획하천 | ○현지 및 문헌조사 | ○수질 및 수리·수문 현황 파악 |
| | 수리·수문 | ○하류수계 | ○수리·수문 해석 | ○공사시 토사유출 영향예측 ○계획홍수량 등 수리·수문 변화 검토 |
| 생활 환경의 안정성 | 기 상 | ○계획하천 | ○인접 기상대 기상자료 분석 ○현지 및 문헌조사 | ○기초자료 활용(대기질 항목) ○공사시 공사장비 및 토공작업에 의한 영향예측 |
| | 대기질 | ○주변지역 | | |
| | 토양 | ○계획하천 ○주변지역 | ○문헌조사 ○토양오염시 처리검토 | ○토양현황 파악, 토양오염시 처리방법 검토 |
| | 소음·진동 | ○계획하천 ○주변지역 | ○소음·진동 예측식 -거리감쇠 공식 | ○소음·진동 현황, 발생원 및 공사시 정온시설 영향 범위 예측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예측 |
| 사회 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 | 토지이용 | ○계획하천 ○주변지역 | ○문헌조사 ○원단위 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
| | | ○계획하천 ○주변지역 | ○현지 및 문헌조사 ○사업계획 분석 | ○토지이용 현황 파악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파악 |

나. 환경현황조사계획

- 본 과업에 대한 환경현황 조사항목은 하천 수질 및 저질, 자연생태환경으로 계획함.
- 하천 저질에 대한 현황조사는 과업기간 내 2회 조사하며, 하천 수질 및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현황은 과업기간 내 2회 조사를 계획함.

〈표 5.2 - 2〉 환경현황조사 계획

| 구 분 | | 조 사 항 목 | 지점 | 횟수 | 비고 |
|-------------|-------------|---|------|----|----|
| 환경질 측정 | 하천수질 | ○ 현지조사 - 유량, 수온, pH, BOD, COD, TOC, SS, DO, T-P, T-N, 총대장균군수, Chl-a, Cd, As, CN, Hg, Pb, Cr6+, ABS 등 총 19개항목 | 28지점 | 2회 | |
| | 하천저질 | ○ 현지조사 - 입도분포, 강열감량, 유화물, T-N, T-P, COD, Cd, Cu, As, Hg, Pb, Cr, Zn 등 총 13개 항목 | 28지점 | 2회 | |
| 동·식물상 조사 | 육상 동·식물상 | ○ 현지조사 - 식물상과 식생 - 육상동물(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 - | 2회 | |
| | 육수 동·식물상 | ○ 현지조사 - 육수동물(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 | 2회 | |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6.1 의견수렴 계획

6.1.1 초안 공고·공람 계획

- 본 과업인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이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평가서 초안을 공개하여 공람할 계획임.
- 또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예상되는 해당권역의 행정구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비치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일~40일 이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토록 할 계획임.

〈표 6.1 - 1〉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고·공람 계획(안)

| 구 분 | 공람장소(안) | 비 고 |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군, 청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 5개 시·군 |

6.1.2 설명회 및 공청회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 및 장소는 추후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 |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설명회의 개최) |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 중 략 ~ |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 |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6.1.3 관계기관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은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기관(금강유역환경청), 관할 도지사(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시장·군수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임.

| |
|---|
| <p>「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p> <p>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p>「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p> <p>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6.1.4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공개

-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주민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게시할 것임.
- 또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인터넷,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현수막 등)를 활용할 계획임.